

24.2.1. 본회의 의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

구분	주요 내용	비 고																			
① 후원회지정권자	- 지방의회의원(지역구·비례) 후원회지정권자 추가	- 개정시한('24.05.31)내 미개정시 국회의원 후원회 지정 근거 효력상실																			
② 후원회의 등록	- 지방의회의원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· 대통령 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 경선후보자 등의 후원회로 지정 가능	-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 하여 허용 (후원회 등록절차 간소화)																			
③ 후원인의 기부한도	- 광역의원 후원회 : 200만원 - 기초의원 후원회 : 100만원	※ 지방의원 외에 지방의원후보자등에 대한 기부한도 동일하게 조정																			
④ 후원회의 모금·기부 한도	- 광역의원·후보자등 5천만원 - 기초의원·후보자등 3천만원 ※ 지방의회의원 정수 .광역 872(지역 779, 비례 93) .기초 2,987(지역 2,601, 비례 386)	- 지방의원후보자등 후원회 모금한도 고려 ※ 현행 후보자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50%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3">선거비용제한액의 50%</th> <th>평균모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광역</td> <td rowspan="2">평균 2,700만원</td> <td>최고</td> <td>3,100만원</td> <td rowspan="2">1,300만원</td> </tr> <tr> <td>최저</td> <td>2,400만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기초</td> <td rowspan="2">평균 2,300만원</td> <td>최고</td> <td>2,800만원</td> <td rowspan="2">900만원</td> </tr> <tr> <td>최저</td> <td>2,1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선거비용제한액의 50%			평균모금액	광역	평균 2,700만원	최고	3,100만원	1,300만원	최저	2,400만원	기초	평균 2,300만원	최고	2,800만원	900만원	최저	2,100만원
구분	선거비용제한액의 50%			평균모금액																	
광역	평균 2,700만원	최고	3,100만원	1,300만원																	
		최저	2,400만원																		
기초	평균 2,300만원	최고	2,800만원	900만원																	
		최저	2,100만원																		
⑤ 후원회 사무소·연락소 설치 및 유급 사무직원 수	- 현행 규정 적용(사무소 1개, 유급사무직원 2인 초과 금지) - 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겸임 허용	- 현행 규정은 한도만 규정, 사무소 및 유급사무직원 들지 여부 임의 사항 ※ 회계책임자 등 사무직원은 자원봉사(무급) 가능 ※ 지방의회후보자등은 보통 선거사무소를 후원회 사무소로 활용, 후보자가 회계책임자 겸임 가능																			
⑥ 그 밖의 조문 정비 사항 및 부칙	- "후원회를 둔 국회의원" 조문에 지방의회의원 추가	- 공포한 날부터 시행 - 현직 지방의회의원 '24.7.1.부터 후원회 지정																			
⑦ 정당·국회의원 등 회계보고 열람기간 연장	- 6개월 ※ 3개월 열람기간 위헌	- 개정법 시행 당시 열람 중인 재산상황, 정치자금의 수입·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간 열람																			